

로고	정보공개서	홈페이지 주소
	등록번호	20190159
	최초 등록일	2019. 02. 19.
	최종 등록일	2024. 05. 10.
		www.zerokini.co.kr

[제로키니]

정 보 공 개 서

[주 제로키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제로키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울산광역시남구 법대로8번길 32, 1층(옥동)]

가맹본부 대표전화번호 [052-258-4155]

가맹본부 대표팩스번호 [052-258-4159]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팀 [010-3255-7102]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주) 제로키니’의 ‘제로키니’)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제로키니’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 제로키니	제로키니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번길 32, 1층(옥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 05. 06.	2022. 05. 16.	곽대성	052-258-4155	052-258-4159
	법인등록번호	230111-0372894	사업자등록번호	754-87-0220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이사	(주) 제로키니/ 곽대성	제로키니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번길 32, 1층(옥동)		
			곽대성	052-258-4155	052-258-4159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감사	(주) 제로키니/ 곽은정	제로키니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번길 32, 1층(옥동)		
			곽대성	052-258-4155	052-258-415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제로키니		2022. 05. 26.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번길 32, 1층(옥동)	곽대성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제로키니]라고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제로키니	-
상 호	제로키니 []점	-
상표(서비스표)		-
광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	-	-	367,315	-	-
2022	202,544	97,237	105,306	392,657	57,119	78,306
2023	339,009	147,926	191,083	710,404	59,137	85,777

☞ 2020~2021년 매출액은 양수도전 당사의 직영점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합니다. [별첨 2] 참조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가맹사업이외의 사업을 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곽대성	대표	2018. 04. 05. ~ 2022. 05. 15.	제로키니 대표	경영 총괄
			2022. 05. 16. ~ 현재	(주) 제로키니 대표이사	
가맹사업 관련임원	곽은정	감사	2022. 05. 16. ~ 현재	(주) 제로키니 감사	영업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했던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등록 번호	가맹사업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임원)/곽대성	제로키니	20190159	2018. 04. 05.~ 2022. 05. 25.	‘제로키니’라는 영업표지의 스포츠관련 가맹사업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ZEROKINI 제로키니 ZEROKINI GYM 제로키니 짐  [제로키니 제로키니 짐 ZEROKINI ZEROKINI GYM ZRKN]	서비스표	2017. 03. 15.	4103910820000	곽대성	2027. 03. 15.

※당사는 소유자 곽대성(現대표이사)으로부터 상표권사용계약을 2022년 5월 26일에 체결하여 모든 상표권의 사용을 존속기간까지 허락받았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제로키니]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7년 1월 2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6년 7월 19일)

2. [제로키니]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로키니	제로키니	곽대성	2018. 04. 05. ~ 2022. 05. 25.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번길 32, 1층(옥동)
(주) 제로키니	제로키니	곽대성	2022. 05. 26. ~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번길 32, 1층(옥동)

3. [제로키니]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제로키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스포츠 관련	맨몸운동 트레이닝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제로키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1	9	2	14	13	1	14	12	2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11	9	2	14	13	1	14	12	2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제로키니]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8	1	0	0	1	9
2022	9	4	0	0	3	13
2023	13	0	1	0	0	12

6. [제로키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제로키니]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2023년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2	110,464	2,238	171,028	4,434	68,362	1,009	-
서울	0	-	-	-	-	-	-	-
부산	0	-	-	-	-	-	-	-
대구	0	-	-	-	-	-	-	-
인천	0	-	-	-	-	-	-	-
광주	0	-	-	-	-	-	-	-

대전	0	-	-	-	-	-	-	-
울산	12	110,464	2,238	171,028	4,434	68,362	1,009	-
세종	0	-	-	-	-	-	-	-
경기	0	-	-	-	-	-	-	-
강원	0	-	-	-	-	-	-	-
충북	0	-	-	-	-	-	-	-
충남	0	-	-	-	-	-	-	-
전북	0	-	-	-	-	-	-	-
전남	0	-	-	-	-	-	-	-
경북	0	-	-	-	-	-	-	-
경남	0	-	-	-	-	-	-	-
제주	0	-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제로키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제로키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日)
2023	12	1,485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2023년 광고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36,227			-
광고			36,227			-

☞ 광고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 광고 및 판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91	052-265-900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1일내에 예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주) 제로키니’ 예치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 방법은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052-265-9001)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제로키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4,300				
가맹비	5,500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영업 개시 후	오픈 전 해지시 가맹계약체결에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 공제 후 반환
최초교육비	5,500			교육의 개시	
사전홍보비	3,300			행사의 개시	
※ 사전홍보비는 파트너(트레이너) 교체시 재발생되어 가맹본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5,000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종료 후조치 (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9,300
가맹비	5,500
최초교육비	5,500
사전홍보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5,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132㎡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87,540	2,188			점포 및 장비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소도구	가맹본부	5,000		상품 주문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덤벨, 스텝박스,TRX,풀업 밴드,딥스바,폼롤러 ,클라이딩디스크
전자기기	가맹본부/ (협력업체)	6,500		상품 주문 1일 이전	공급 전 계약 취소	인바디,CCTV,타블 렛PC, 데스크탑, 스피커, 냉장고 등
초도 기타	가맹본부	400		상품 주문 1일 이전	공급 전 계약 취소	액자, 사무, 기타
인테리어	(협력업체)	58,500	1,462	계약서 작성일 70% 중 간일 20% 공사 완료일 10%	공사 시작 전 계약취소 (사전 공사 준비 위약금 발생)	점포 내장공사, 냉난방기, 철봉, 매트보관대, 수납장, 사무실 책상, 의자, 장의자, 파티션 등
간판&내부 디자인	가맹본부	11,000		계약서 작성일 50% 공사 완료일 50%	공사 시작 전 계약취소 (사전 공사 준비 위약금 발생)	아크릴, 간판, 시트 등
청소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560	14	청소 예약 1일 이전	공급 전 계약 취소	

	지정한 업체(미정)					
매뉴얼	본사	5,500		계약 체결시	계약종료 후 유출 없이 매뉴얼 반납 시	
카드단말기	(협력업체)	80		상품 주문 1일 이전	반환불가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자체시공시 도면 및 설계비용 금오십오만원(₩550,000/부가세포함)과 3.3㎡당 인테리어 디자인비용 금사십사만원(₩440,000원/부가세포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하수도 및 화장실 공사, 외부공사 및 철거,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TV, 전기/가스 증설, 오픈행사, 인·허가 등의 비용은 별도입니다.

※ 도표상의 해당 항목 금액은 기준 평수의 가맹점 오픈시 예상금액입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등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요청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계약 체결 후 7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100%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실제 발생비용 전액
계약 체결 후 교육의 시행	교육비 전액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주체 : 가맹점사업자 지원 : 슈퍼바이저팀 (070-4116-5139)	담당자 배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구단위) 파악 → 가맹본부의 권장지역 안내(동단위) → 가맹희망자의 선택 → 가맹본부의 상가 선정 조건(체크리스트) 안내 → 가맹희망자의 현장조사 등 시장분석 후 입지 도출 → 인근가맹점 및 상권의 특이사항 고려, 검토된 상가에 맞는 아웃 테리어 조건 부 가맹승인 →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부를 결정함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및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당사 면접 합격자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9) 당사는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등에 대하여 분납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점모집 광고 인지,브랜드 광고 인지 여부에 따라 다름	광고비 고지서를 받은날로부 터 2주 이내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 후	V. 9.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미정)	협의	협의	시공 전	시공 후	교체 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추후 산정	협의	교육 미시행시		-
전자 게시판 관리 비용	가맹본부	매월 11,000원	매월 말일	반환불가	실비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회원등록비의 25%	매 익월 5일	반환불가	실비	

지점A/S	가맹본부	비용의 25% 및 공임비	수리 완료 후 3일 이내	반환불가		
점포환경개 선비용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미정)	가맹본부가 요구시 : Ⅶ.1 외 비용 부담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맹점과 가맹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트레이닝	트레이닝, 영양	반기별 1회	문의: 곽대성 (052-258-4155)
회원관리	상담	반기별 1회	문의: 전요셉 (052-258-4155)
청결상태	가맹점 관리	월 1회	문의: 김규광 (052-258-4155)
재고관리	공급된 상품 관리	월 1회	문의: 김규광 (052-258-4155)
회계처리	매출/매입 확인	월 1회	문의: 전요셉 (052-258-4155)
전산관리	회원 및 시스템 관리자 프로그램	월 1회	문의: 전요셉 (052-258-4155)

가) 당사는 월1회 정기배송, 청결상태확인, 기타 운영지원을 위해 귀하의 가맹점에 본사 슈퍼바이저가 방문하며, 가맹점 청결상태가 엉망인 경우 제로키니 브랜드 이미지 손상의 우려가 있어 2회의 시정권고를 주고, 3회차부터는 운영자가 청소업체를 고용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시정권고를 줄 때 본사 슈퍼바이저는 불청결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운영자에게 전송하고, 청결하게 유지함을 권고합니다.

나) 당사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및 장부/회원정보 수정 접수를 그룹웨어 다운로드를 사용하며, 귀하의 가맹점은 비용을 일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희망시 별도의 통신망을 이용해도 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별도로 납부 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

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협의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는 위약벌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양수 받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맹비,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 양도 양수간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개할 수 있으며, 양도 양수 매뉴얼에 따라 가맹점 하자보수 필요항목을 확인하고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표준 양도 계약서 제공, 양도자 양수자간 비용 중재 및 사후관리의 대가로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 300만원(VAT별도)의 수수료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잔여 회원등록비, **적립 마일리지 환급액**을 포함한 인수인계 수수료 25%(VAT별도), 상품권리금 및 회원권리금 수수료 25%(VAT별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300만원(VAT별도)의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 · 비품 · 집기 및 당사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 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철거 ·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 ·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제로키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제로키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는 [제로키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그룹 PT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 또는 영업 할 수 없음	1회위반: 1차 서면 시정 요구 2회위반: 2차 서면 시정 요구 3회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공급 및 판매	1회 위반: 구두 경고	

타 가맹사업자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물품, 용역	할 수 없음	2회 위반: 1차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2차서면 시정요구 4회 위반: 계약 해지	
---------	-----------------------------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가격 결정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그룹 PT	230,000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공지	지역 및 경영 환경에 따라 변경 가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그룹 PT를 전문 가맹사업	가맹본부	계열회사
	제로키니	-

☞ 귀하의 영업지역에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의 [제로키니]와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를 추가 입점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 및 활성화상권이 아닐 경우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50m 단, 특수상권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휴게소, 대형 쇼핑몰, 종합병원 등) 및 활성화상권(울산 삼산, 홍대입구, 명동, 이태원, 부산 서면 및 해운대, 대구 동성로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제로키니]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제로키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네이버스토어 어팜	https://smartstore.naver.com/zerokini	요가매트	동일 상품 판매
			ISP보충제	
			오버핏 티셔츠	
			레깅스	
			손목 보호대	
			중량조끼 5KG	
			기능성 티셔츠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2.40%	17.43%	없음	0.05%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 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	-

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7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 [제로키니]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7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제25조 제1항 각호 물품 공급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1.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3.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4.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5. ‘을’이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을’이 ‘갑’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7. ‘을’이 물품대금, 로열티, 광고·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8. ‘을’이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9. ‘을’이 ‘갑’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10. ‘을’이 노후된 점포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1. ‘을’이 ‘갑’으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2.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을’이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14.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을’이 매뉴얼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당사 슈퍼바이저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6.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7.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18. ‘을’이 고객으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19. ‘을’이 당사의 매뉴얼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20.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3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1.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을’이 제18조 제 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 제1항
---	----------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8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8조 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8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제38조 제2항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8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8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8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에 양수인을 찾는 등의 중개를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금삼백만원(W3,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인수인계시 발생하는 금액(회원등록비 환급, 회원관리금, 상품관리금, 지출선납금 등)에 대하여 25%의 수수료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 후 3개월 내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에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대리행사 여부 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업무위탁 여부 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전지역에서 귀하가 [제로키니]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직계가족 구성원이 아래의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체육 관련 및 신체 트레이닝 관련 매출이 발생하는 운동센터 및 이와 관련된 가맹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및 운영, 샵인샵 포함)	아래 경우에 한하여 경업을 허용(프리랜서 활동만)한다. 1. 제로키니 가맹점 운영을 하고 있는 가맹점주인 경우 2. 가맹점 오픈(또는 트레이너 교체)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회원수가 정원의 100%를 초과한 경우	문의: 영업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제로키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23:00	법정 공휴일 외 영업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해당없음	직접근무	당사 승인자	가맹점사업자의 부재시 당사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레슨(20항목)	자가진단체크리스트	1회/반기	문의: 곽대성 (052-258-4155)	
경영(5항목)	자사 웹 서비스 확인	1회/반기	문의: 전요셉 (052-258-4155)	
청소(2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1회/월	문의: 김규광 (052-258-4155)	

	및 서명 → 완료			
재고(상황별상이)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월	문의: 김규광 (052-258-4155)	
전산	담당자 확인→가맹점 사업자 확인→ 완료	1회/월	문의: 전요셉 (052-258-4155)	
회계	담당자 확인→가맹점 사업자 확인→완료	1회/월	문의: 전요셉 (052-258-4155)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제로키니]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상품, 브랜드, 가맹점모집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전액부담	없음	본사에서 계획&진행
	순수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전액부담	없음	본사에서 계획&진행
		기획, 제작비용 이외는 협의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월의 참여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을 균분하여 산정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동의 시 전체 적용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 시 진행하며, 70% 미만의 경우 동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광고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의 25%(부가세 별도)를 가맹점사업자는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위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당사의 시스템, 매뉴얼, 조리방법, 제조, 판매, 영업, 계약 및 점포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인지할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이나 노하우 및 이들이 수록된 운영교범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자점매입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W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를 위반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W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계약기간)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제로키니]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금이십만원(W200,000)씩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33조(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오천만원(W50,000,000)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벌로 당사에 금오천만원(W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금오십만원 (₩50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지급해야하는 위약벌은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우선 상계처리하도록 합니다.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을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용
합계		60일 내외	
1차 가맹 상담	- 전화문의 접수 - 담당자 배정 - 1차 미팅 - 사업 계획서 설명	D-60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이력서	- 이력서 전송, 이력서 합격	D-59~56	
면접	- 면접 진행, 합격	D-55~51	
2차 가맹 상담	- 상권분석, 인근현황 문서 - 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 비밀 서약서 수신 - 오픈 진행 절차 - 인테리어 시안 수령 - 자료수신서	D-50	
매물확인	- 상가 매물 확인 - 임대차 계약	D-49~44	
인테리어	-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 전달 - 도면 요청시 전달	D-37	
3차 가맹 상담 가맹 계약 체결	- 인테리어 업체 결정/계약 - 초도물품서 확인 - 가맹금 예치 안내	D-34	
인테리어 공사	- 내&외부	D-33~D-DAY	
가맹금 예치	- 현물 보증금&가맹금 예치	D-33	
사업자 등록	- 신규사업자 정보 안내	D-33	
교육 시작	- 트레이닝&영양학&상담&전산&회계 &청강실습 등	D-49	
시설&비품 관련 가맹금 수령	- 인바디&전자기기&소도구&이외 비품	D-20	
사전 오픈 홍보	- 온&오프라인 - 컬러링 등록	D-32~D-DY	
본사 확인	- 오픈 필요 사항 확인	D-2	
개점	- 사전 오픈 홍보 내역 제출	D-DAY	
수정조치	- 피드백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마일리지	마일리지 사용 비용 분담	판매된 상품(등록권 및 가입비 제외)	계약 기간	‘지원 조건’에 따라 사용된 마일리지 * 로열티 비율	해당 가맹점 회원 유입을 위한 지원제도이기에 마일리지가 적립된 지점에서만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부담	문의: 지원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 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 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부담(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비용 을 초과한 부 분에 한함)	문의: 지원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제로키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트레이닝 ◦영양학 ◦전산&회계&세무 ◦상담 외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교육	1:1 강의 및 실습도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개점 후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교육	집단강의 및 실습	매월	필수 교육
개점 후(보수) 교육	◦가격 및 프로그램 변경 시 ◦점주 집체교육의 필요성 시	집단강의 및 실습	필요시	수시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귀하가 [제로키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상담&스피치 교육	10시간	5,500	최초 계약 시 이수 (습득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트레이닝.센터운영 교육	18시간		
	소양, 영양학 교육	7시간		
	세무.회계.전산.어플 교육	4시간		
	청강 및 실습	19시간		
개점 후 교육	수시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별도통지 함
	특별교육	별도계획		
	재교육	별도계획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교육·훈련 진행계획

☞ 매월 진행하는 개점 후 교육(연구강의)은 전염병 확산 위험 등의 귀사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또는 1:1 개별교육으로 대체되거나 미진행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울산	야음점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33, 3층
2	울산	전하점	울산 동구 진성3길 56, 가동 202호 (전하동,무지개상가)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3.5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132,957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1- 가맹금예치신청서①]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 예금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별첨1- 가맹금 예치신청서②]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3]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tel:010-4399-557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확인서 -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수령확인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수령장소	
제공받은 사실	<u>“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u> [하단 자필기재요망]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 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수령확인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수령장소	
제공받은 사실	<u>“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u> [하단 자필기재요망]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 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